

조례(규칙)제정 · 개폐상황보고

사 천 시

조례(규칙)명	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		
종 류	제정()	개정(○)	폐지()
제 안 자	시장(○)	시의회의원()	
조례 규칙 심의회	제 5 회 심의회(2003. 3. 12.)		
의 회 의 결 일	2003년 3월 21일	이 송 일	2003년 3월 21일
공포기한(예정일)	2003년 4월 9일	재의요구기한	2003년 4월 10일
근 거 법 령	가. 대통령령 제16550호 기구정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 나. 지방자치단체 정·현원 관리 지침 통보		
소 관 부 서	총 무 과		
관련중앙행정기관			
제정 · 개폐 사유	2003년 8월 31일까지 결원의 총수범위내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불부합현원의 총수(26명)를 조례로 정함에 따라 계급별 인원을 규정하기 위함.		
주 요 골 자	○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·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연장하고 불부합 현원의 총수를 조정함. (안 조례 제381호 부칙 제3조2항) - 기한 : 2003. 2. 28 → 2003. 8. 31(6개월) - 불부합 총수 : 37명 → 26명(2003. 3. 1기준)		
검 토 의 견			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	2003. 3. .
제 출 자	사 천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사천시지방공무원중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(2003. 2. 28)이 도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그 기한이 연장(2003. 8. 31)협의됨에 따라 2003년 3월 1일 현재 불부합 현원과 기한을 연장 조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·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연장하고 불부합 현원의 총수를 조정함.
(안 조례 제381호 부칙 제3조2항)
 - 기 한 : 2003. 2. 28 → 2003. 8. 31(6개월)
 - 불부합 총수 : 37명 → 26명(2003. 3. 1기준)

3. 법적근거

- 가. 대통령령 제16550호 기구정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
 - 2002. 6. 10공포 시행
- 나. 지방자치단체 정·현원 관리 지침 통보
 - 경상남도 행정 12200- 10311(2003. 2. 14)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(붙임 1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담당관실

라. 기 타

(1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입법예고 : 시민의견 불필요

(3) 규제심사 : 규제신설·폐지 등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381호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6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 칙(제381호)</p> <p>제3조(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) ① 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7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부 칙(제381호)</p> <p>제3조(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6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u></p>

(붙임 1)

법령발체내역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(안)

□ 지방자치단체 정·현원 관리지침(기구·정원규정 개정령 시행 관련)

1. 근거 : 대통령령 제16550호 기구정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
(2002. 6. 10 공포·시행)

○ 주요 개정내용

- 2003. 2. 20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·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규정 할 수 있다.
-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2003. 2. 28까지 종류별·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2. 기한 연장을 위한 협의내용

- 종류별·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. 8. 31 까지 연장 협의함(2003. 2. 14)
 - 2003. 2. 28 → 2003. 8. 31 (6개월 연장)

3.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할 사항

- 결원발생시 직종·직급별 불부합현원 우선 해소 적극 노력
- 조례·규칙 개정
 - 지방공무원정원조례
 - 2003.8.31 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의 총수(불부합현원의 총수)를 명시(시행일 : 2003. 3. 1)
 -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
 - 조례에서 정한 불부합현원에 대해 계급별 정원을 규정(시행일: 2003. 3. 1)